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영실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508

발 의 년 월 일 :2021년 05월 28일
발 의 자 :이영실, 권수정, 김경영, 김경우, 김용석, 김제리, 김혜련, 김화숙, 박기재, 조상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신규 민간위탁을 통해 통합 운영하여 행정 효율성 및 가족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시립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운영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규정에 맞춰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8조)

나.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 관련 사항을 규정함. (안 제19조)

다.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2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8호 중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설치”를 “설치·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중 “설치·운영 및 지정”을 “설치·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0조제1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5조를 삭제하고, 제26조를 제25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원의 범위)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7. (생 략) 8.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 9. ~ 11.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지원의 범위) ① ----------. 1. ~ 7. (현행과 같음) 8. ---------- 외국인주민 ---------- 9.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항에 따른 지원시설이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제7조제2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및 지정할 수 있다.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 ---------- ---------- ---------- --- 설치·운영---------- ---.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2조의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3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사회공익에 반하는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④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단체·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 <삭 제>
<신 설>	② 시장은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지원시설이나 지원센터의 수탁자는 지도·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	① ----- 제18조제3항이나 제19조제3항에 따라 지원시설 또는 지원센터----------

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삭 제>
제25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및 위탁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삭 제>
제26조 (생 략)	제25조 (현행 제26조와 같음)

문 서 번 호	2021052500000004

미 첨 부 사 유 서 (2 호)

요 청 인 : 보건복지위원회	담 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채소영 주무관
접 수 일 : 2021.05.25	
회 신 일 : 2021.05.26	내용문의 : 02-2180-7942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 무 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지원의 범위)제1항제8호에서 결혼이민자를 외국인주민으로 개정함에 따라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주민 등으로 지원대상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외국인주민의 현황을 구하기 어려워 기술적으로 추계 곤란

- 안 제18조(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에서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제19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서는 지정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민간위탁 관련 내용을 추가하고 있으나 이는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안 제20조(업무의 위탁)을 제20조(시설 및 센터의 운영지원 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외국인주민 지원시설과 서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의안이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제3조제1항제2호)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정책조사팀장 이정수
주 무 관 채소영
☏ 02-2180-7942
e-mail : liz1998@seoul.go.kr